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7월 6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7월 6일

라. 상정일자: 2026년 7월 21일

제29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 영 철

나. 제안이유

- 1)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인프라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 2)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위탁사무: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 2) 추진근거
 - 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나)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 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2조
 - 라)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 및 제16조
- 3) 위탁사무
 - 가)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 인프라 구축 및 운영
 - 나)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장비·시설구축
 - 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및 사업지원 사무 위탁
- 4) 위탁기간: 2026년 ~ 2028년
- 5) 소요예산: 3,800백만원(국 2,100 도 510 시 1,190)
- 6) 사업개요
 - 가) 총사업기간: 2026. 7. ~ 2031. 12. 31.(6년간)
 - 나) 총사업비: 7,400백만원(국 4,200 도 960 시 2,240)
- 위탁기간 내 사업비(3년) : 3,800백만원(국 2,100 도 510 시 1,190)
 - 다) 사업대상: 경상북도 소상공인 등
 - 라) 구축장소: 구미상공회의소 내(구미시 송정대로 120)
 - 마) 사업규모: 502.60㎡(152평) / 지하1층, 지상2층
 - 바) 컨소시엄: 경상북도, 구미시, 지역과 소셜비즈, 경북농식품유통교육진흥원
 - 사) 수행기관: (사)지역과 소셜비즈
 - 아) 조직구성: 전담인력 5명, 지원인력 4명
 - 자) 사업내용: 디지털 콘텐츠 제작공간 설치 및 교육,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 7) 수탁자 선정방식: 수의계약 (※ 수탁자 :중앙공모사업의 주관기관)
- 8)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2026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 9) 부서의견 : 지역 소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및 온라인 판로지원을 위한 라이브커머셜 스튜디오 등 인프라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공공사업으로, 공모사업 주관기관에게 위탁하여 사업계획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제12조(위탁),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3조(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등), 제16조(의회 동의)
- 2) 예산조치: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호 규

○ 본 동의안은

-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전문기관에 해당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본 위탁 사무는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소담스퀘어)를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¹⁾의 공모사업에 해당하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공간 제공, 온라인 판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1) 중소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 민간위탁 사무는 원칙적으로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나, 본 사업은 공모 사업의 특성상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유통플랫폼 전문기관 간 컨소시엄 구성이 필수적인 사업으로, 공개모집이 곤란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추후,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 힘써 주기 바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수행기관 내 마케팅 전담부서 부재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적합성에 대해 우려가 있음.
- 높은 시비 부담 비율을 고려하여 구미 지역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용시 우선권(쿼터제) 등 실질적인 혜택 방안 마련이 필요함.

7. 심사결과: 원안가결